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사전 안전교육 안내(필수사항)

1. 여주 【세종국악당】과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은 공연법에 의거한 등록된 공연장으로 공연법 11조의 4항 시행령 9조 4항 사항에 따라 관객을 제외한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자 모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연자	어린이집 · 유치원	학교	일반 교육 행사	대관 및 공연
출연자	무대에서 노래, 안무, 악기, 연기 등의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 또는 행사의 강연과 사회자 역할을 맡은 자			
	무대에서 공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원생, 원아, 외부 공연팀 인원		강사, 사회자	아티스트, 배우
스태프	무대에서 무대 전환 역할을 맡은 자 또는 무대기계 · 조명 · 음향 · 영상 스태프 또는 해당 역할을 맡은 자			
작업자	관객석에 위치하는 학생, 원생, 원아 인솔 교사 제외		음향 · 조명 · 스태프	창작진
	무대 내 프로그램 진행 및 지도 교사			(무대 · 음향 · 조명 · 영상 스태프 등)

○『공연법』 제11조의4(안전교육)

- ①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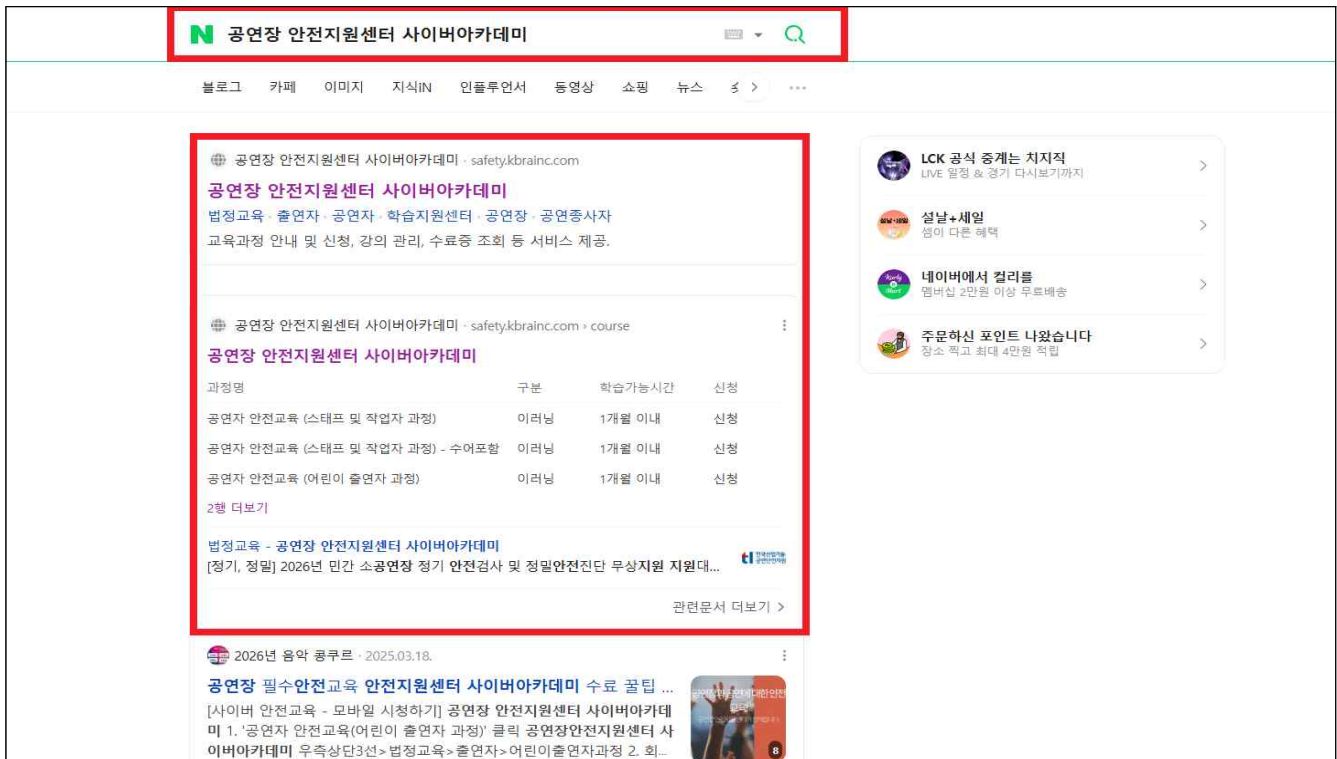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 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 2. 안전총괄책임자
 -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4시간 이상
 - 3. 안전관리담당자
 -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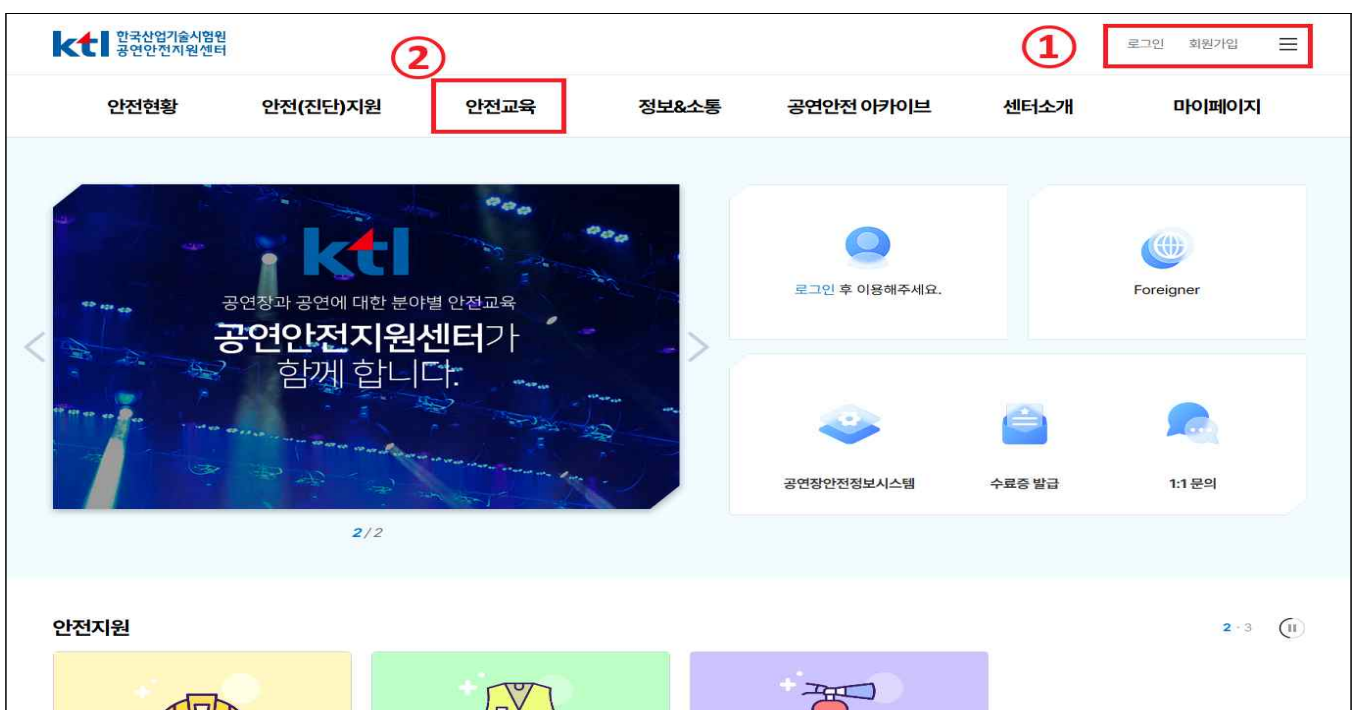
2. 공연법에 의거 공연자 안전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에서 **사이버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오니 행사와 공연 일정 전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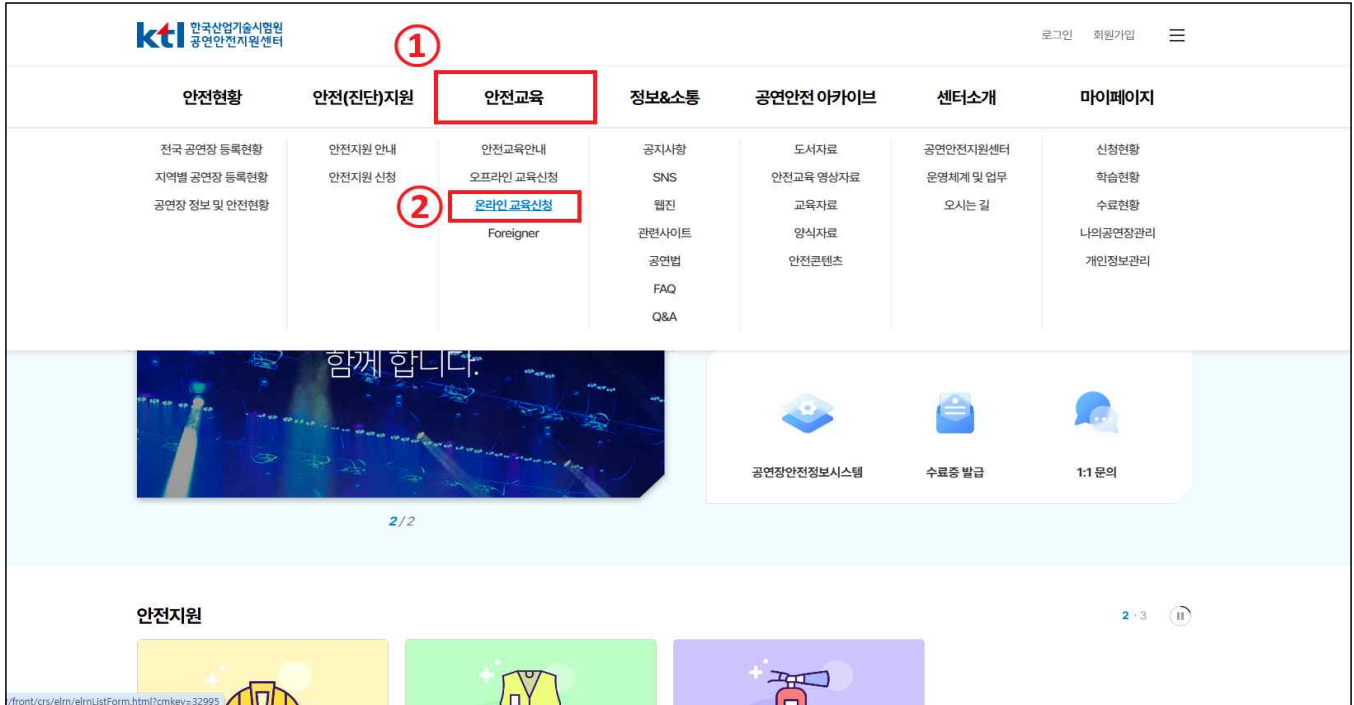
가) URL : <https://www.stagesafety.or.kr/main.html>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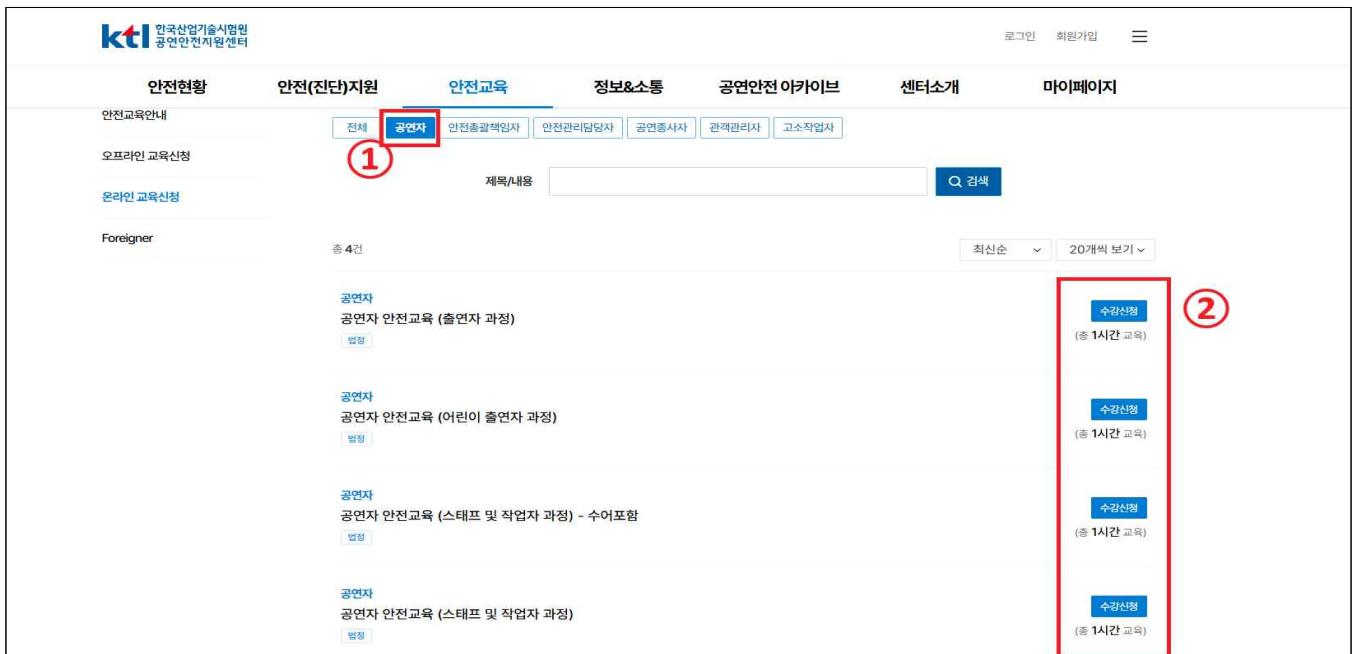
나)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 진행



다) 【①안전교육】 - 【②온라인 교육신청】



라) 【①공연자】 선택 - 직무에 적합한 과정 【②수강신청】



라) 교육 수료 후 **수료증 인쇄** 후 대관일에 제출

❑ 공연장 안전교육 안내

- 안전교육 1시간 = 온라인 교육 시간(55분) + 공연장 현장 교육(5분)
- 수료증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유효 기간 중 모든 공연장 활용 가능